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34

발의연월일: 2025. 1. 10.

발 의 자:정을호·추미애·정태호

한준호 • 전현희 • 진성준

김동아 · 강유정 · 강경숙

김준혁 • 백승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과 이사 및 감사 등 이사회 임원의 결격 사유와 겸직 금지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일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축약하여 회의록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, 심지어 회의록에 허위 서명을 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. 또한, 해당 학교나 법인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 임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해야 하며 또한, 녹취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고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

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및 제23조 등).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4항 본문 중 "공개하여야"를 "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기간·절차, 그 밖에"를 "절차와 녹취록의 보관방법, 파기절차·방법 등에"로 한다.

- ⑤ 이사회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④ 이사 및 감사는 학교법인이나 그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사립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.
- 제74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의2.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5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
 - 3의3.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10 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8조의2(회의록의 작성 및 공 제18조의2(회의록의 작성 및 공 개 등) ① ~ ③ (생 략) 개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. ④ -----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 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하여야----. 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⑤ 이사회는 녹취록을 작성하 <신 설> 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 ⑥ -----절차 •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와 녹취록의 보관방법, 파기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차·방법 등에-----제23조(임원의 겸직금지) ① ~ 제23조(임원의 겸직금지) ① ~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④ 이사 및 감사는 학교법인이 <신 설> 나 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 하는 사립학교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을 겸할 수

없다.

제74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학교법인의 이사장,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4. ~ 10. (생략)

③ ~ ⑤ (생 략)

제7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
여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5일
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
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아니하
거나 5년 동안 공개하지 아니
<u>한 경우</u>
3의3.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
여 녹취록을 작성하지 아니하
거나 10년간 보관하지 아니한
<u>경우</u>

4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